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72
----------	-----

2020. 12. 18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2월 8일

-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한순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통합기금의 계정구분(안 제2조)
-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-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-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1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)으로 변경하고, 통합계정은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, 융자하며,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및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임.

<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>

-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07년 1월 1일자로 설치된 기금임.
- 기금조성액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2018년말 조성액	2019년말 조성액	2002년말 조성액
78,356	77,496	73,349

나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기존 “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 에서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 로 개정함.

- 기존 ‘통합관리기금’에서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기금 명칭이 변경된 사유를 살펴보면, 이전 「지방재정법」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위한 ‘재정안정화기금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서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‘통합관리기금’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었음. 이와 같이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유통 기능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에 제약이 있었음.
 - 이에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유통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두 기금을 통합한 ‘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 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함) 설치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(시행 ‘20. 6. 9.)에 따른 것임.
-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, 법제처 “법령 입안·심사 기준”에 따르면, 목적 규정에는 약어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, 본 조항에 사용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~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 ~	제1조(목적) ~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~

- 안 제2조는 통합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토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것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또한, 안 제1조에서 수정한 약어표기를 안 제2조에 포함해야 할 것임.

개정안	수정안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<u>통합기금</u> 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	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<u>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</u> 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○ 안 제3조 및 제4조는 충청북도에서 통합기금 운용을 위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,

-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, 융자금의상환액 및 이자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,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,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용도로 사용함.

-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%를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20% 이상 적립하여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%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용도는 세입감소와 재난·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대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임.

- 지방안정화 계정의 재원 적립 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

본법」 제16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충북의 경우 타 시도 기준의 평균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보임.

※(참고) 전국 시·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현황 참조

- 다만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이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,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적립 금액의 축소가 예상되는 바, 이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<충청북도 최근 5년간 세입 및 잉여금 현황(결산)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15년도	'16년도	'17년도	'18년도	'19년도
지방세 세입액	9,679	10,053	10,664	11,346	12,904
순세계잉여금	2,253	2,227	2,048	2,712	2,100

- 안 제6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~

- 안 제8조는 예탁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정으로,
 - 기존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와 동일하게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, 예탁이자는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.

-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
본법」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
의하기 위한 ‘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’ (이
하 “위원회” 라 함) 의 설치·기능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
규정한 것임.
- 위원회에 관련해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시
행일 2020. 8. 7.)제5조에 “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
따른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의 제11조의2(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, 제17조(수당
등의 지급)은 각각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제9조 및 제15조와 내용상 중복으로 볼 수 있는 바, 조례의 간결성
측면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<p>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.</p> <p>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 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 - 「충청북도 각 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, 제10조와 중복</p>
<p>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 - 「충청북도 각 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와 중복</p>

- 안 제13조(임기) 조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, 현행 조례에서는 위촉
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개정

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. 그러나 다수에게 위원활동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, 장기 연임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연임</u> 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	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한다.	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</u> 할 수 있다..

- 안 제16조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,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안 제1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한 것임.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는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 - 본 기금은 법률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은 타당함.

- 다만, 개정안의 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를 삭제할 경우, 개정안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는 제18조로 수정해야 함.

○ 안 부칙에는 시행일, 경과조치,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부칙 제3조제10항의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(이하 “청소년육성기금조례”라 함) 일부개정 내용과 관련해, 현행 청소년육성기금조례 제3조제3항에는 “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”로 정하고 있는 바, 본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조례 제3조제3항의 위원회 명칭도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를 통해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.

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p> <p>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p> <p>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3항 중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</p>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)으로 변경하고, 통합계정은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, 용자하며,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,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음.

- 다만, 주요내용 검토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함.

참고

전국 시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현황

시도	조례명	재정안정화계정 재원적립 기준		비고
		지방세	순세계잉여금	
부산	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	-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대구	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년대비 20% 초과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
대전	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	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배 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울산	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120% 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경기	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순세계잉여금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	
충남	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전북	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3년평균 증가율 30%초과시 초과분의 10%이상	3년평균 200%초과시 초과분의 20%이상	
경남	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년대비 20%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30%이상	3년평균 120%초과시 초과분의 30%이상	

※ 조례 미개정 시도(서울, 인천, 광주, 세종, 강원, 전남, 경북, 제주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12. 8. 이의영 의원

나. 수정이유

- 잘못된 약어표기 사용 및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과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와의 중복된 내용의 삭제, 그리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추가 등이 필요함.

다. 수정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의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김.
- 조례안 제11조의2와 제17조를 삭제함.
- 조례안 제13조(임기)의 “2년으로 한다” 를 “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.
- 조례안 제18조와 제19조를 각각 제17조와 제18조로 수정함.
- 조례안의 부칙 제3조제10항에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추가함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」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 이라 한다)” 를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” 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통합기금” 을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 이라 한다)로 한다.

제11조의2와 제17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2년으로 한다” 를 “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18조는 제17조로, 제19조는 제18조로 한다.

부칙 제3조제10항에, “제3조제3항 중 “충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 로 한다” 를 신설한다.

개정안	수정안
제13조(임기) 위원회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한다.	제13조(임기) 위원회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</u> 할 수 있다.
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<삭 제>
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(개정안과 같음)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8조(시행규칙) (개정안과 같음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⑨ (생략) 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⑪, ⑫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⑨ (개정안과 같음) ⑩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3조제3항 중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⑪, ⑫ (개정안과 같음)</p>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**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**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**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**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
2. 통합 계정 용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.
3.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
 - 가.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 - 나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기획관리실장
2. 분임통합기금운용관: 예산담당관
3. 기금운용관: 기금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
4. 통합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탁의무)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예탁기간 및 이율)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

한다.

1.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 2. 기금관련 전문가
 3.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
 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, 예산 및 결산,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4.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
5.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기금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예탁금의 만료 기한 전 상환) ① 예탁금은 통합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채권·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.

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통합관

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 하되,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③ 「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④ 「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⑥ 「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⑦ 「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⑧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” 를 “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” 로 한다.

⑨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기금운영 심의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 및 제11조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” 를 “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⑪ 「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(체육진흥기금 계좌)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의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

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⑫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 중 여유 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.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.관리

2. 비용 발생 요인 :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

3. 관련조문

- 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(중략)
 1.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 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. (이하생략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

나. 추계의 전제 :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회계연도 보다 20% 초과한 경우
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

다. 추계의 결과 : 최근 5년간 결산자료 검토시 20억 발생

(단위 : 억원)

구분	'15년		'16		'17		'18		'19	
	결 산	가능액	결 산	가능액	결산액	가능액	결 산	가능액	결 산	가능액
지방세	9,679	-	10,053	-	10,664	-	11,346	-	12,904	-
순세계	2,253	-	2,227	-	2,048	-	2,712	20	2,100	-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예측불가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신성영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